

수신자 수신자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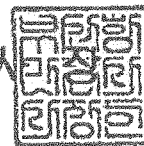
(경유)

제 목 「부산항 항만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
관련 협조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우리 공사 법무TF-1258호(2018.11.26.)의 관련입니다.
2. 「부산항 항만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시행지침」 일부 개정으로
부두 내 하역작업 시 안전장구(안전모, 안전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근거 1부. 끝.

부산항만공사



수신자 부산항운노동조합, 감천항 이용 선사, 대리점, 하역사

사원

감석주

과장 신현구

소장

전결 12/27

간주태

협조자

시행 감천사업소-2080 (2018.12.27.)

접수

우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 35

/http://www.busanpa.com/

전화 051-999-2136

전송 051-203-3018

/sjkang@busanpa.com

/비공개(8)

주소 하나로 빠르고 편리한 생활, 이제 도로명 주소입니다.

부산항 항만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시행지침

<최종공포일 2018.11.20.>

제 15 조 (출입자 준수사항) ①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출입증을 소지하고 항만시설을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항만시설관리, 화물관리 및 부두 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승낙 및 안내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4. 승낙 없이 위험물 또는 폭발물(위험화물 및 상용연료 등은 제외)을 반출입하거나 화기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5. 차량은 주차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6. 항만출입증을 위·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 무단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항만시설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8. 항만시설 및 선박, 부두 내에서 총기류·마약 밀반출입, 밀수 등 각종 범죄행위를 하거나 모의하여서는 아니된다.
9. 항만시설을 출입하면서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행위를 기도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을 위반하거나 방해함으로써 항만보안업무 및 대테러활동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11. 항만시설 출입자는 점문검색에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
12. 항만시설 내 무역항에서는 일체의 상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운수업자는 선원 및 관련자들의 입국 및 상륙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로 부두내에 입국·상륙시키면 아니된다.
14.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항만시설 출입이 원활할 수 있다.
15. 항만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음주측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16. 제3조제6항에 따른 차량 동승자의 출입절차 위반 시 동승자는 물론 운전자도 같이 출입제재를 받을 수 있다.(컨테이너트레일러 차량 동승자 포함)
17. 사전승낙 없이 무단사진(영상)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자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만시설 내 작업구역에서는 안전장구(안전모,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단, 경비인력은 안전모를 대신하여 근무모를 착용할 수 있다.
2. 항만시설 내 이동 시 안전에 유의하여 차량(순환버스 등) 또는 지정보행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3. 항만시설 내 차량 이동 시에는 비상등을 점등하고 규정속도(30km이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컨테이너 장치장 작업자 외에는 장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5. 항만시설 내 이동 중인 장비에 주의하고, 작업자 외에는 작업 중인 장비 주위에 접근하지 않는다.
6. 항만시설 내 안전수칙 및 각 안전표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2]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위 반 내 용	제 재 조 치	비 고
출입증 위·변조	출입증회수, 출입통제 90일, 관계기관에 고발(본인 및 회사 연대책임)	
출입증 부당사용(도용·대여·이직 등)	출입통제 90일(1회), 120일(2회), 180일(3회), 상시출입증 발급 제한 1년(1회), 3년(2회), 영구박탈(3회), 관계기관에 통보(본인 및 소유자)	
출입증이나 승낙서 없이 출입한 자	출입통제 1년 및 관계기관 고발	
출입증 분실 허위보고 후 무단사용	출입통제 90일, 출입증 발급금지(본인 및 회사 연대책임)	
항만시설관리, 화물관리 및 부두질서 방해	출입통제 30일, 관계기관에 고발(본인 및 회사 연대책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출입한 외국인	출국시까지 출입통제, 관계기관에 인제	
항만시설 및 선박, 부두 내에서 총기류·마약 밀반출입, 밀수 등 각종 범죄행위를 하거나 모의한 자	출입증회수, 출입통제 1년, 관계기관에 고발	
승낙 및 안내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한 자	출입통제 30일	
승낙 없이 위험물 또는 폭발물 반출입 및 화기를 취급한 자	출입통제 60일, 관계기관에 고발	
주차위반	출입통제 14일	
보안검색 및 음주측정 불응	출입통제 14일(본인 및 회사 연대책임)	
무단사진(영상) 촬영	즉시퇴장 및 사진압수, 소벌(1회), 7일(2회), 14일(3회), 30일(4회 이상) 출입금지(본인 및 회사 연대책임)	
항만출입증 분실	경고(1회), 7일(2회), 14일(3회), 30일 이상(4회 이상) 출입금지(본인 및 회사 연대책임)	
이동명령 등 통제 불응	출입통제 30일	
항만시설 내 상거래행위 적발	출입통제 30일, 관계기관에 고발(본인 및 회사 연대책임)	
항만시설 내 무허가 입국 및 상륙 행위	출입통제 30일, 관계기관에 고발(본인 및 회사 연대책임)	
차량 동승자 출입절차 위반 행위	즉시퇴장 및 출입통제 30일(운전자 및 동승자 연대책임)	
<u>제15조 제2항의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행위</u>	<u>경고(1회), 7일(2회), 14일(3회), 30일 이상(4회 이상) 출입금지</u>	
항만시설 출입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출입증회수	